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7호
Dec. 2023

보험 정책 동향

-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8.) -

1. 개 요

- **금융회사 임원**이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 주요 내용

[1]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
  -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
  -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함
  -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

-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업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하여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점 >

은행	지주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 종금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원↑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미만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원↓

* 1단계(법 시행후 6개월전까지 제출) → 2단계(1년) → 3단계(5년이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0조의3 (책무구조도)**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이 법, 「상법」, 「형법」, 금융관계법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 "책무구조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책무구조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할 것 2. 제1항에 따른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대표이사 등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 금융회사는 대표이사등이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2] 대표이사 등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함
-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 신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0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임원(해당 금융회사의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을 포함하며,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담당하는 직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2. 내부통제기준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이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준하는 조치로서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조치 ② ~ ③ (생 략)
<신 설>	**제30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 ③ (생 략)

[3]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5의2호 및 제4항, 제16조 제5호 및 제3항, 제22조의2 신설**

현 행	개정안
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 7. (생 략)	**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 설>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금융회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로 본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제16조(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내부통제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점검·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와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4]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부과

- 관리조치를 미실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제재를 부과**
  -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신설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고유의 자기책임**
  -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신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제재조치(제5항에 따른 조치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3. 향후 계획

-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규정 마련과정에서 **광범위한 금융권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지속 소통**하고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지속 **전파**해 나갈 계획

(원문 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81211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